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개선방안 연구: 폰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 종 업*, 김 인 철^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Protection in Computer Programs: Focused on Font Program

Jong Eop Kim*, In Cheol Kim^o

요 약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는 쉽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법무법인 등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의 사용자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형사상의 고소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보호제도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사례분석(판례 포함)을 통해 저작권 침해와 보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Key Words :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Protection, Computer Program, Font Program

ABSTRACT

We use smart phones and computers everyday to work and communicate. Smart phones and computers have various programs that support them,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these programs. This has led to many cases in which copyright holders and law firms of font programs are claiming copyright infringement and sending warnings or proof of content to users of public institu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or demanding outrageous settlements under the pretext of civil and criminal charges. Thus, this study will find the right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rough analysis of various cases surrounding copyright protection of the most socially problematic computer programs under this recognition. To this end,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statu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through existing relevant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including precedents) centered on font programs, and to present policy measures that can be easily used by anyone.

* First Author :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pyright Protection, kimje49@hanmail.net, 정회원

^o Corresponding Author :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pyright Protection, kim208@smu.ac.kr, 정회원

논문번호 : 202108-207-0-SE, Received August 12, 2021; Revised August 29, 2021; Accepted September 1, 2021

1. 서 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많이 발생하면서,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서 꼭 필요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다. 특히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법무법인 등이 폰트 또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의 사용자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형사상의 고소를 발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¹⁾.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한글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 개발자의 노력이 있으므로, 이것은 관련 법에서 보호를 통해 프로그램의 권리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²⁾. 그렇지만 일부의 권리자(저작권자)가 무분별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인해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다.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인 사용자(혹은 소비자)에게 민·형사상의 불법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시일(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그리고 폰트 프로그램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과 활용이 일반화되고, 이를 통한 업무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과 갈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나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폰트(글자체)의 보호 문제가 떠오르면서 10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 1973년 「타이프 페이스(typeface)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서는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과 같이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와 이를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alphabet)’에 대한 한 별의 디자인을 활자체(typeface)의 정의에 포함시켜 폰트를 활자체(typeface)의 일종으로 정의하였다^{1),3)}. 그러나

이 협정은 현재까지 5개국 이상의 비준, 기탁 등 발효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폰트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글자의 모양 자체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므로 인해, 폰트 프로그램(혹은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⁴⁾. 이와 더불어 폰트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권’이 보장되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폰트를 보호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리자가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하면서 법무법인을 앞세워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요구하는 도구로 많이 이용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터넷 배너 광고나 웹 페이지 상의 다양한 홍보물에 특정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면, 관계된 권리자는 사용된 폰트가 자신이 권리를 가진 것인지 누가 사용한 것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속성이 사라지고 디자인으로서 이미지화된 글자의 모양일 뿐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할 수 없다⁵⁾. 이처럼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활용이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보호제도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사례분석(판례 포함)을 통해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 침해와 보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의 이해

많은 사람들은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서 작성된 문자나 기호 등의 디자인 한 벌을 의미한다⁴⁾. 1973년 국제협약의 하나로서 「타이프페이스(typeface)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은 글자 모양에 대해 '악센트(accent) 기호와 구두점 등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와 이를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alphabet)'에 대한 한 벌의 디자인을 활자체(typeface)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폰트를 활자체의 일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⁵⁾.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제2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글자체'라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어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 '폰트 도안'이나 '서체 도안'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실무 분야에서는 폰트, 글자체, 글꼴, 타이프페이스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혼용⁶⁾된 채 사용되고 있다.

한편, 폰트 프로그램의 정의는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것”⁷⁾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법원의 판례에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체의 윤곽선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제작된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들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인쇄나 프린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점’에서 폰트와는 다른 이용의 도구가 활자판·식자판 등에서 정보처리장치로 변경되나, 문자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폰트의 요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⁹⁾. 더불어 폰트 프로그램은 ‘한벌성’ 또는 ‘이 한 벌의 글자꼴 간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⁸⁾.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은 “글자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 고정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원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하여, “폰트 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구(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 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⁹⁾. 또한, 법원은 판례에서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 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폰트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폰트 개발자 또는 제작자의 개성이 담긴 표현 방식과 다른 폰트와 차이가 있는 창의적 선택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폰트 파일의 창작성(저작물)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10),11)}. 이에 더해 우리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폰트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폰트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도 있다¹²⁾.

2.2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논쟁

우리 법원은 판례에서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 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 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나 이에 따른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 사례에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해 다룬 관련 사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폰트 파일이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처럼 특정한 저작물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라고 ‘소설’이라 하면 무조건 어문저작물로 보호되거나, 관련 평론가들이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의미의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식 칠판이나 벽에 분필을 사용하여 그린 단 하나의 직선이나 곡선이 모두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¹³⁾. 1996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 후에 일부의 개발자 또는

사업자들은 제3자가 만든 폰트 프로그램을 개발자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띤 형태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¹⁴⁾. 즉 판매자들이 폰트 프로그램들을 한 장의 시디롬(CD-ROM)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용행위들은 글자체(폰트) 개발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폰트 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법원도 폰트 프로그램 무단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정의에 맞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¹⁴⁾은 폰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 판례이지만, 판시 중에 ‘폰트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폰트 프로그램으로서 그 저작권이 위 회사에 있고”와 같이 관련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점에서 최초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고 수 있다. 항소심¹⁵⁾ 역시 “주식회사 000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위 신명서체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¹⁶⁾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 후 1998년 무렵이 되어 법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판결¹⁷⁾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된 위판 사건에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판결의 내용은 200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①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디지털기 등에서 폰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재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② 완성형과 조합형의 구분없이 두 가지 모두 도안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도안의 과정이 법률이 정하는 보호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고, ③ 폰트 프로그램이 하나로 되어 있거나 다수로 분리되어 파일로 저장되느냐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④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 여부는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직접 코딩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코딩하지 않았어도 데이터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¹⁸⁾, 이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3 선행연구 고찰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연구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

분하여 정리를 하였다. 폰트에 대한 기존 논의이다. 김현숙(2016)은 국외의 입법과 사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등) 등에 나타난 폰트에 대한 지적재산권 법률 상의 보호 범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폰트의 종류와 유형 등을 나눈 후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PDF 파일에서 사용되는지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각각의 경우 어떠한 저작권 관련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분석했고, 폰트를 합당한 권리에 기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PDF 파일 제작 같은 그와 관계된 산출물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상의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진근(2019)은 폰트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폰트 도안 과정의 창작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폰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글자체의 이용에 따른 문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제한 영역도 다루었다. 유길상·김현철(2015)은 폰트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이해와 알려진 국내외 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이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폰트 저작권법과 정책 사례, 그리고 폰트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승민·송양호(2018)은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폰트 보호와 관련하여 권리자(개발자 또는 창작자)의 해당 권리 보호와 공정한 폰트 이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창달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폰트 저작물은 보다 실용적·기능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폰트 저작권의 침해와 분쟁의 최소화, 권리자(개발자 또는 창작자)의 지나친 저작권 관련 권리와 권리남용의 방지 노력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을 통해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차상욱(2019)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① 우리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폰트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관련된 태도와 해외의 관련 이슈에 대한 동향과 입법례, ② 폰트 디자인(서체 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상에서 어떤 유형의 저작물과의 관련성과 법적인 보호범위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 ③ 대법원의 의의와 비판적 평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⁹⁾. 강기봉(2019)은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판례나 정책을 분석하면서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폰트와 관련된 법원의 판

결이 행해진 이후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과 이에 따른 폰트의 저작물로서 보호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폰트에 대한 보호 대상과 코드 of 창작적인 표현 여부,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⁹¹⁾. 신창환(2020)은 폰트를 폰트 자체(혹은 도안)와 폰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보호 여부가 다른 현행 보호 체계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저작권 보호 문제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다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현행 법제와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알 수가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들은 폰트 또는 폰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서 문제가 되는 폰트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법제와 정책적인 부문에 중심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관련 판례와 사례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폰트 프로그램 논쟁 사례 현황과 분석

3.1 폰트 프로그램 사건의 이해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에 대해 다른 국가들처럼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손글씨(예, 서예)나 캘리그래피 등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면 관련 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¹⁹²⁾. 이같이 저작물로서 기능적 요소와 별개로 독립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으므로 인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폰트는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폰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폰트 모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체 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였다¹⁹³⁾.

반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여,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① 다른 응용프로그램 없이 단독으로 실행되지 아니하여도 해당 컴퓨터 내에서 특별한 모양의 폰트 옵션을 크기, 굵기, 기울기, 간격 등의 조절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편리하게 프린트하도록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만들어진 표현물이고, ② 폰트 파일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폰트의 특정한 모양을 만들거나 수정하여 폰트의 좌표 값을 지정·이동 시키거나 서로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해당 내용도 하나의 좌표 값과 좌표 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⁹⁴⁾. 또한 폰트 프로그램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이의 실행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와

표 1. 선행연구의 고찰
Table 1. Review of Precedent Literature

구분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폰트	김현숙 (2016)	- 폰트의 지적재산권법 상의 보호범위에 대한 비교 연구 - 폰트의 종류와 유형 분류
	정진근 (2019)	- 글자체 보호에 관한 법·정책 연구 - 폰트 도안의 창작적 영역 고찰과 보호방안
	유길상·김현철 (2015)	- 폰트에 대한 법적 이해와 분쟁 사례 분석 - 폰트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방안 연구
	박승민·송양호 (2018)	- 폰트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와 공정이용 - 권리남용 방지와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폰트 프로그램	차상유 (2019)	-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연구 - 관련 판결 의의 평가
	강기봉 (2019)	- 미국·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와 정책 분석 -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분석
	신창환 (2020)	- 현행 보호체계 문제점 분석 - 폰트에 대한 보호 정책 제안

디지털 기기 등의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하고 일반적인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폰트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이와 관련된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개발자 또는 제작자의 창의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¹⁰⁾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글자의 모양인 ‘서체(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확장자가 “*.ttf” 인 형태로 컴퓨터에 설치·저장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¹¹⁾. 예를 들어, 누군가가 A 폰트 도안을 보고 그대로 종이에 베껴서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낸다면, 이 같은 행위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고, 폰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폰트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전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면, 실생활에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침해 행위가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폰트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은 부정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의 생성되는 것은 창작자/개발자 등이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하며, 등록 같은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통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도 별도의 저작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긴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70년이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의 판단도 하나의 ‘업(業)으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대부분 폰트는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를 통해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불어 폰트 제작자는 자신이 만든 폰트가 허락없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법이나 판례를 따지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2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컴퓨터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폰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 빈도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는 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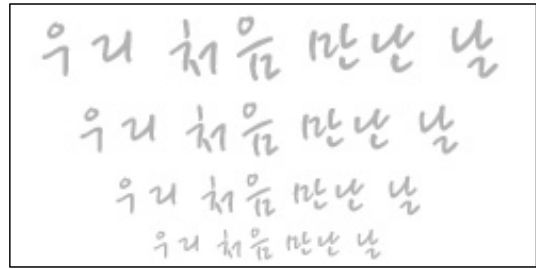


그림 1. 산돌02의 사례
Fig. 1. Case of ‘Sando02’

를 중심으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폰트 프로그램 논쟁의 대표 사례인 (주)산돌커뮤니케이션 사건에서 원고(피항소인)인 (주)산돌 커뮤니케이션은 폰트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폰트 전문 회사로, 제품명 “산돌02”라는 이름을 가진 폰트 프로그램(이하에서는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만들어, 2000년 9월 15일 공표하였고, 2010년 9월 9일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피고 A(항소인, 이하에서는 ‘피고’라 칭함)는 2011년 8월경 경기도 안산시청으로부터 시의 홍보영상물에 대한 제작을 도급받아 제목 “C”라는 홍보영상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상물’이라 칭함)을 만들어 납품하였다. 문제가 된 영상물의 자막에는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폰트들이 홍보영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¹⁰⁾. 피고는 문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제1심 판결의 공동피고 B(이하에서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홍보영상물의 자막 제작을 포함한 관련 영상물의 편집 작업을 하도급 하였다. B는 홍보영상물의 자막 글자들 중에 사용된 일부를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후 이 영상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에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은 피고가 공동피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의 홍보영상물에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전액인 514만원을,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되, 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7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 각 인정하였다

^[10,21]. 이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홍보영상물의 문제가 된 자막 부분을 B에게 하도급 했는데, B가 A와 협의나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물을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완성된 홍보영상물(작품)을 경기도 안산시청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B의 독단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3.3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

사례 판결의 의미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폰트 도안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침해 여부를 명백하게 구별하여,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저작권법상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점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 판단 여부에는 일반적인 저작물과는 다르게 고도의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 판결을 보면, 현실적으로 폰트 도안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 사례에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사례를 토대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파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폰트 파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울 수 있을 것이다^[13]. 폰트 파일의 지시·명령성 관련해서, ‘글’의 형태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글”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어문저작물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 ‘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폰트 파일의 창작성과 관련해서, 폰트 파일이 일련의 지시·명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될 수는 없더라도, 만일 폰트 파일을 이루는 표현에서 그 창작성이 인정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명시된 타 유형의 저작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사례에서 나타난 현행 저작권 보호제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의한 폰트 프로그램 보호 방

법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폰트 보호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폰트 디자인의 보호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시·명령이라는 점에서 폰트는 그 보호 대상에 대한 심각한 오인이다^[22,23]. 둘째, 이 보호 방법은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의 코드화되는 데이터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간에 명확한 구별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모든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폰트를 보호하지 않고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방법은 원도안을 창작한 자나 개발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단지 이를 디지털화한 제작자에게만 폰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폰트를 보호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폰트만을 이용하는 사진과 인쇄 관련 사용 방식을 규제하지 못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앞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폰트 이미지만 스캔하는 이용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혹은 법원 판례)는 저작권 침해사항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8].

IV.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문제의 해결방안

4.1 폰트 프로그램 보호범위의 명확화

저작권법상 폰트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한 핵심 과제는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된 활자체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좁거나 또는 넓게)에 달려 있다. 각각의 저작권 침해나 분쟁 사안에서의 관련 산업계나 저작권 실무상 제기되는 우려(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범위에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문제들을 조정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성과 독자성 요건에서 미리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소극적인 접근 태도·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실질적 유사성의 요건’을 해석해서 저작권법상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더 타당할 수 있다. 폰트 디자인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이 예측적 모방과 완전 모방(테드카피)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복제인 경우, 저작권법상 침

해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에 바탕을 둔 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한 조정방안도 법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¹¹⁰⁾. 다시 말해, 강한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법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폰트는 상용 폰트와 무료폰트가 존재하는데, 상용 폰트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하였다더라도 구매계약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폰트 프로그램 구매조건에 따라 이용이 허락되었을 뿐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한다¹²⁴⁾. 무료 폰트 프로그램은 권리가 무료사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폰트 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무료폰트 프로그램이라도 이용범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용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폰트들의 경우 “Free for personal use”로 표기된 폰트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은 어렵다. “100% free”라고 명시된 폰트일지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앱(App.)에 임베드(embed)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폰트 개발사의 명시적인 사용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기업에서 개발한 폰트 중에는 개인·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가 가능한 오픈 폰트 라이선스(open font license) 글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인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유사한 형태의 공개 라이선스이다. GPL과 다르게 폰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지 않을 뿐 폰트를 모바일 앱에 포함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책이나 디자인 용품, 홈페이지, 광고, 간판 등에 사용할 때에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이용은 가능하나 OFL 글꼴 파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약관에 위반되는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된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인식하는 나눔 폰트 프로그램들의 지적재산권은 NHN에 있고 이런 무료 폰트 프로그램들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묶어 판매하거나 다른 무료폰트와 함께 판매할 경우 이용 라이선스 약관에 의해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거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약관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4.2 공정이용의 확대와 공공저작물 활용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으로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 폰트 파일 개발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그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무조건 창작자의 권리만을 강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유통, 소비, 재창작의 구조가 붕괴되고 결국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두어 공정이용(fair use)(저작권법 제35조의3)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창작자 권리를 위한 법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 문화발전을 위한 공정이용 방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범위도 법 조항에 의해 한정적인 이용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저작물, 교육용,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인터넷 포털 기업에서는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료 폰트 프로그램은 리눅스, 맥OS X, 윈도우즈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책용 폰트 파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앱과 웹기반 콘텐츠 사용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무료 폰트 프로그램 같은 OFL 서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디자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공개된 서체도 많다. 이 같이 모바일기와 서비스에 기본 제공되는 한글 서체가 각광 받는 배경은 회사, 기관, 개인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일반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기업들에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폰트 파일 시장의 수요를 저해하고, 무료로 공개되는 폰트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만큼 저작권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 기기 제조업자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 활용사례도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도 다양한 폰트 프로그램을 쓰면 콘텐츠를 즐기는 경험 수준이 훨씬 좋아진다는 인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

서 본다면 폰트 프로그램마켓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만든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저작물로서 폰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폰트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침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개발자/창작자 등)는 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폰트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호를 제한하는 타당해 보인다. 현재처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다. 경고장 발송이 저작권자의 권리 찾기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부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의 과도한 경고장 남발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까지도 횡포로 비취지는 것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인 문화창달과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경고장이 저작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오·남용과 아니면 말고 식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과도한 저작권 행사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문화창달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권리행사는 오히려 저작권 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인 용도로 창작자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하지만, 사적 이용이나 교육 등과 같은 공정이용에 있어 저작권 보호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련 산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의 확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공공저작물로서 폰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S. Kim, "A study on copyright of font used in PDF document," *Inha Law Rev.*, vol. 19, no. 1, pp. 263-291, Mar. 2016.
- [2] Y. J. Lee, "Research on representative letterforms for developing effective hangul fonts - with focus on balance & proportion," *J. Korean Soc. Typography*, vol. 4, no. 1, pp. 1187-1201, Jun. 2012.
- [3] S. M. Park and Y. H. So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font protection system," *J. Northeast Law Res.*, vol. 12, no. 2, pp. 377-396, Sep. 2018.
- [4] S. J. Lee, *Research Paper: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ont-file*,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 3, Dec. 2001.
- [5] H. W. Lee, *Copyright Law*, Seoul: Parkyoungsa, p. 291, Apr. 2015.
- [6] J. T. Kim, *Font Story*(1), 11, Dec. 1993.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Copyright Commission, *Know Font File Copyright Right away*, Jan. 2019.
- [8] J. K. Jeong, "Study on the protection of typography," *Quart. Copyright*, Winter, pp. 5-41, Dec. 2019.
- [9]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8도732 judgement [copyright infringement]*, 2001a. 5. 15.
- [10] S. Y. Cha, "Protection for typeface designs(font designs) under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so-called "Sandol 02" font program case-," *Quart. Copyright*, Fall, pp. 91-136, Sep. 2019.
- [11]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9Da50552 judgement [compensation/indemnification for damage]*, 2001b. 6. 26.
- [12]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9Da23246 judgement [Impos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2001c. 6. 29.
- [13] C. H. Shin, "A Study on Creativity of Font Files as a Computer Program," *Quart. Copyright*, Summer, pp. 43-81, Jun. 2020.
- [14]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 94Godan1665 judgement*, 1995. 7. 28.

- [15]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 95No5359 judgement*, 1996. 7. 10.
- [16]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6Do1935 judgement*, 1997. 2. 11.
- [17]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 97No1316 judgement*, 1998. 2. 24.
- [18]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8Do732 judgement*, 2001. 5. 15.
- [19] G. B. Kang, "A study on the copyright ability of typeface file," *J. Ind. Property*, vol. 60, pp. 279-324, Jun. 2019.
- [20]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 94Do3266 judgement* [copyright law infringement] [44(1),959;Gong1996.4.15.(8),1170], 1996. 2. 23.
- [2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 2016Gaso6020121 compensation/indemnification for damage (District) judgement*, 2017. 4. 5.
- [22] S. W. Ryu, "A realistic foundation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of type files and font files," *Quarterly Copyright*, Spring, Mar. 2019.
- [23] J. K. Jeong, "Study on the Protection of Typography," *Quarterly Copyright*, Winter, pp. 5~41, Dec. 2019.
- [24] G. S. Yoo and H. C. Kim, " Copyright infringement case study of digital font for fair us," *Korea Inst. Info. Technol. Mag.*, vol. 13, no. 1, pp. 27-32, Jun. 2015.

김 종 업 (Jong Eop Kim)



2002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졸업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
학과 석사
2019년 9월~현재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빅데이터, 정보정
책, 저작권

[ORCID:0000-0002-6634-2404]

김 인 철 (In Cheol Kim)



1996년 8월 :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
2010년 8월 : Washington Uni-
versity Law(Copyright) 박사
2011년 3월~현재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저작권법, 콘텐츠 법·정책

[ORCID:0000-0001-8885-8463]